미술진흥법안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10 발의연월일: 2021. 7. 14.

발 의 자:도종환·이상헌·김정호

김민철 • 이병훈 • 박 정

조승래 • 안민석 • 임오경

이광재・김의겸・윤준병

김철민 · 인재근 · 유정주

김승원 의원(16인)

제안이유

미술은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근원으로, 미술의 창작에서부터 향유, 이를 매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화적·사회적 가치는 우리 국민이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의 누릴 수 있는 원천이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미술은 「문화예술진흥법」을 통해 문화예술의 세부장르로 명시되어 있으나, 미술진흥을 위한 실효적 체계로서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향유 등 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를 포괄하지는 못하는 한계가 있음.

이에 미술창작을 근간으로 매개, 향유 영역이 순환하며 생태계의 자생적 발전을 이끄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강하고 공정한 미술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이 미술을 보다 폭넓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강국을 실현하는 것을 제정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미술", "미술품", "미술기록물", "미술전시", "미술관련 서비스업" 등 미술진흥에 필요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11호까지).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미술진흥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 광부 소속으로 미술진흥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마.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 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바.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활동 및 전시지원, 창작공간의 확충, 지역미술 활성화,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미술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등 미술생태계의 전반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 사. 미술분야의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 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한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 아. 미술분야의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술품 유통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에게 진품증 명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의 발행 요청권을 부여함(안 제17 조).
- 자.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의 마련 및 고시를 두도록 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시 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차. 법률에 따라 고시된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18조제4항).
- 카. 미술관련 서비스업 중 미술품 유통업과 미술품 감정업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처벌해야 하거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 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통합미술 정보체계의 구축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 파. 미술품의 재판매 시 작가가 사후 보상적인 성격의 청구권으로서 "재판매권"을 도입하도록 함(안 제25조제1항).
- 하.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28조).
- 거. 미술품 감정에 관한 공적역할 및 정책지원을 위해 국립미술진흥원

- 에 미술품의 평가 등 감정업무를 전담하는 감정센터의 설립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33조).
- 너. 정부미술품을 비롯한 공공미술품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확산을 이하여 국립미술진흥원에 미술은행의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4조).

미술진흥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미술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의 창작과 유통, 향유를 촉진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미술"이란 시각적 매체를 이용하여 예술적 경험을 창출하는 일 련의 예술활동을 말한다.
- 2. "미술품"이란 작가가 미술 관련 활동을 통하여 산출한 유·무형 의 창작물을 말한다.
- 3. "미술기록물"이란 미술 활동 과정 중에 생성된 기록 중 보존할 가치를 지닌 기록을 말한다.
- 4. "미술전시"란 미술품 및 미술기록물(이하 "미술품등"이라 한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보여주는 활동을 말한다.
- 5. "미술 관련 서비스업"이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이 경우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6. "미술품 유통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 을 말한다.
 - 가. 화랑업: 작가를 발굴 또는 양성하고 미술전시를 통해 미술품을 대여,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
 - 나. 미술품 경매업: 경매(「민사집행법」 제271조에 따른 경매는 제외한다)를 통하여 미술품을 중개하거나 판매하는 업
 - 다. 미술품 대여업: 가목 이외에 업으로서 미술품을 대여하는 업
 - 라. 기타 미술품 유통업: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 포함)에 대하여, 위 가목부터 다목까지 이외의 방법으로 중개, 판매 또는 대여하는 업
 - 마. 미술품 자문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 방법으로 미술품(미술품에 대한 권리 포함)의 가치 또는 취득과 처분 결정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업
- 7. "미술품 감정업"이란 미술품의 진위(眞偽)나 예술적, 문화적, 역사적 의미와 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한 감정서를 발급하는 업을 말한다.
- 8. "미술 전시업"이란 미술품등의 전시를 기획, 조직, 개최, 또는 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 9.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고 미술품 유통

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하는 자 나. 미술 전시업을 하는 자

- 10. "공공미술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 및 「박물관및 미술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과 미술관의 소장품은 제외하다.
 - 가. 제11호에 따른 정부미술품
 - 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 교육청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제28 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미술진흥원에 관리 업무가 위탁된 미술 품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미술품 중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미술진 흥원에 관리 업무가 위탁된 미술품
- 11. "정부미술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기관이 소유한 미술품으로서 예술적 가치 또는 보존가치가 높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관리되는 미술품을 말한다.
 -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

- 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미술과 미술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미술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5년마다 미술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미술진흥 중·장기 기본방향
 - 2. 미술진흥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개선
 - 3. 미술 창작ㆍ기획ㆍ전시 활동의 지원
 - 4. 미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 5.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 6. 미술 관련 공정한 거래질서의 구축
 - 7. 미술품의 유통 활성화

- 8. 공공미술품의 관리
- 9. 미술 향유 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10. 그 밖에 미술진흥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세부 시행계획을(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정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미술진흥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미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미술진흥정책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미술진흥 정책 방향 설정
- 3. 미술진흥 지원사업의 협력 · 조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위원은 미술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수 있다.
- 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의 이해와 관련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 ·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환경,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

- 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단체 등에 자 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창작. 유통 및 향유

- 제8조(창작활동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활동을 지 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전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미술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미술관련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술 전시를 지원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술 전시 활성화를 위

- 하여 기획자, 미술 전시업자, 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 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창작공간등의 확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 전 시 및 보존·보관을 위한 공간 및 시설(이하 "창작공간등"이라 한 다)을 확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작공간등을 직접 제공하거나, 민간이 운영하는 창작공간등에 대해서 유지보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창작공간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창작공간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1조(지역미술 활성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미술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미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12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과

관련한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자료의 출판 및 배급
- 2.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 · 연구
- 3.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 4. 그 밖에 미술 관련 국제교류 및 미술품과 작가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술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관련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전문인력수급의 균형 및 다양성 확보
 - 2. 산 · 학 · 관의 협력기능 강화
 - 3. 전문인력의 연수·교류·재교육 기회 확대
 - 4. 연구기반 강화
 - 5. 전문인력의 관련 분야 진출기회 확대
 - 6.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미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진흥이나 미술 관련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예산의범위에서 할 수 있다.

- 제15조(미술 관련 서비스업 활성화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서비스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미술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미술 관련 서비스업의 활성화 및 정보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 조성) ① 국가는 미술진흥을 위하여 미술품의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정한 거래 및 유통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미술시장 현황 분석 및 평가
 - 2. 그 밖에 공정한 거래 및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미술의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불공정한 계약을 계약상대자에게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미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미술 관련 용역의 품질 및 품격 보장을 위하여 적정한 용역 대가를 지급하여 야 한다.
- 제17조(소비자 보호)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미술품 유통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작가 또는 미술품 유통업자로부터 미술품을 구매한 자는 해당 미술품의 진품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진품증명서를 발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발행하여 줄 것을 해당 작가 또는 미술품 유통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제18조(표준계약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하여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등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 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문화예술 재정 지원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 관련 사업자단체 등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누구라도 제1항에 따라 고시된 계약서가 아닌 다른 계약서에 '표 준계약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계약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3항을 준용한다.
- 제19조(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의 신고) ①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첨부서류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운영에 관여하는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ㆍ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제20조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처분을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하 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형법」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5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나.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7.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 8.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 또 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⑤ 제1항에 따라 미술품 유통업 신고를 한 자(이하 "미술품 유통업자"라 한다) 또는 미술품 감정업 신고를 한 자(이하 "미술품 감정업자"라 한다)가 폐업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있으면 신고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제20조(영업정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

정업을 하거나,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때
- 2.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3.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 4. 제19조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에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영업폐쇄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영업의 승계) ①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가 종전의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

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에는 양수인등은 그 양수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종전의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제19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 신고사항이 말소된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제19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그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는 폐업신고 전의 미술품 유통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의 기위를 승계한다.
- 제22조(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의 창작, 기획, 전시, 유통 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품등의 불법복제·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 2.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및 홍보
 - 3. 그 밖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3조(연구·조사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미술 창작, 기획, 전시, 유통, 미술품등의 관리·보존 등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시설·기자재·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모든 국민이 미술 관련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 관련 정보를 기초로 미술진흥정 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미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 개인에게 통합미술정보시스 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

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제3장 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제25조(미술품재판매에 대한 작가보상금) ① 작가는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이 지정·고시하는 미술품의 소유권이 작가로부터 최초로 이전된 이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 관련 서비스업자가 매도인, 매수인 또는 중개인으로 개입하여 해당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도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할 권리(이하 "재판매보상청구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재판매가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 2. 「저작권법」 제9조에 따른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미술품이

재판매되는 경우

- 3. 매도인이 원작자로부터 작품을 직접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재판 매하는 경우로서 재판매가가 2천만원 미만인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양도될 수 없으며,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30년 간 존속한다. 다만, 재판매 당시 작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작가의 법정상속인이 재판매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제26조(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① 재판매보상청구권은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국립미술진흥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행사되어야 한다. 다만, 그 단체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규정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 내에서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판매보상청구권을 가진 자로 구성된 단체
 -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재판매보상청구권자로부터 그 권리행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기관 또는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를 할 권한을 가진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을 때 제출한 업무규정의 중 대한 부분을 위배한 때
- 3. 기관 또는 단체가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재판매보상청구 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재판매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업무에 관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재판매보상금을 분배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분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이하 "미분배 보상금"이라 한다)이 발생하면 그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미술 진흥을 위한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지정 및 취소, 재판매보상금 징수·분배 절차 등과 관련한 업무규정, 수수료

징수, 재판매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정보제공청구권) 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재판매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술품 유통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정보를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범위, 청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국립미술진흥원

- 제28조(국립미술진흥원의 설립 등) ① 미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립미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진흥원이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진흥원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에 분원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⑥ 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⑦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미술진흥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연구·조사·기획
- 2. 미술 분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 3. 미술진흥을 위한 창작, 기획, 전시 지원
- 4. 미술진흥을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지원
- 5. 미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 및 재교육 지원
- 6. 미술품 및 작가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관련 사업
- 7. 미술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 8. 미술진흥을 위한 유통활성화 지원
- 9. 미술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지원
- 10. 통합미술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11. 공공미술품의 관리 및 처분
- 12. 소비자의 권익 보호
- 13. 이 법에서 정한 업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위탁하는 업무
- 14. 미술 관련 기관이 진흥원에 위탁하는 업무
- 15.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⑧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⑨ 진흥원은 진흥원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진흥원의 지원을 받으려는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그 업무의 위탁 또는 지원에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제2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진흥원이 아닌 자는 국립미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0조(경비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진흥원의 설립·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 ②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 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이 기부받은 물품 중 미술품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받아야 한다.
- 제31조(감사) ① 진흥원의 직무 및 회계, 공정한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사 1명을 둔다.
 -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감사는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

될 수 있다.

- 제32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33조(감정센터) ① 진흥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술품의 평가 등 감정업무를 전담하는 감정센터를 둘 수 있다.
 -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2. 세무 당국으로부터 과세를 위하여 미술품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 3. 정부미술품의 구입 및 대여, 재평가, 매각 및 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4. 제30조제2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부받은 미술품에 대한 심사 및 평가에 필요한 경우
 -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감정센터는 제1항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진흥원이 정한다.
- 제34조(미술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미술 진흥원 내에 미술은행을 설치한다.
 - 1. 공공미술품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지원
 - 2. 제5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공공미술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지원
 - 3. 정부미술품의 구매, 자체제작, 선정, 기증 또는 기부 등 취득에 관한 업무 지원
 - 4. 국가기관이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의 선정 업무
 - 5. 정부미술품 및 국가기관이 설치하는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정부미술품등"이라 한다)의 유지 및 보존, 대여, 활용 등에 관한 업무지원
 - 6. 정부미술품등의 처분에 관한 업무 지원
 - 7. 제2조제10호나목 및 다목에서 정한 위탁 미술품의 관리
 - 8. 법령에 따라 미술은행의 업무로 정해지거나 위탁받은 업무
 -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 ② 미술은행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감독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진 흥원 업무, 사업지원, 회계 및 자산 상황을 검사하게 하거나 진흥원

- 에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 위법하거나 부 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에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 제36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①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② 진흥원의 업무 중 지원사업 심사, 미술품 구입, 관리, 처분 및 미술품의 평가 또는 감정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임받거나 위업무를 위탁받아 관여한 일반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29조부터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③ 진흥원의 임원 및 직원, 진흥원의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진흥원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처리한 일반인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제3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미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3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미술품 유통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한 자
 -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3. 제29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 중 미술품 감정업자의 신고 의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제36조제3항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미술품 유통업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미술 품 유통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9조제1 항에 따른 미술품 유통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